

## 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 :

○ 생 년 월 일 :

본인은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.

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.
2.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 아님.
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의 각 호의 1에 해당사항이 없음.
 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12년 월 일

위 확인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방송통신위원회 귀중